

[붙임 4] 중증 장애인 기준[출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]

□ 장애인의 인정 범위

- ①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
- 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
- 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

□ 중증 장애인의 범위

「장애인복지법」	기존등급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
심한장애	1 2	중증장애
	3	뇌병변, 시각, 지적, 자폐성, 정신, 심장, 호흡기, 뇌전증, 지체(상지)
		청각, 언어, 간, 안면, 장루·요루, 지체(상지제외)
심하지 않은 장애	4 5 6	경증장애(모든유형) ※ 지적, 자폐성장애는 경증 없음

* 음영처리 된 부분은 중증장애인을 표시한 것이며, 기존 3급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일지라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장애유형이 존재하므로 유의